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03 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김태선·정준호·장철민

복기왕 • 한민수 • 김태년

윤종군 • 이용우 • 박홍배

이학영 · 김주영 · 윤준병

강득구 • 박해철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공원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이용 적발 건수는 총 5,285건에 달하며, 동기간 동안 비법정탐방로 이용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당하는 등 비법정탐방로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
비법정탐방로는 조난과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, 출입 또는 통행이 금지·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난 시에도 조난자가 섣불리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음에도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의 사실을 공유하거나 출입 등을 모집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어 비법정탐방로 관련 피해가

커지고 있습니다.

이에 비법정탐방로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본문 중 "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"를 "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"로 한다.

6의4. 「자연공원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금지·제한된 지역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해당 지역에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	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
등)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	등) ①
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	
여서는 아니 된다.	
1. ~ 6의3. (생 략)	1. ~ 6의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의4. 「자연공원법」 제28조제
	1항에 따라 금지・제한된 지
	역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
	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
	공유하거나 해당 지역에 출입
	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
	모집하는 내용의 정보
7. ~ 9. (생 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	② <u>제1항제1</u>
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2 및	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
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	<u>부터 제6호의4까지의</u>
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	
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	
시판 관리・운영자로 하여금	
그 처리를 거부・정지 또는 제	
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	,
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	

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	
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	
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	
처리의 거부 · 정지 또는 제한	
을 명할 수 없다.	,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